

# 기안용지

2/21

공민리정

문서번호	법무 181	(전화번호 307 )	전결규정	조항
처리기간	결재차			
시행일자	제1부시장		사	
보존년한	72. 1.			
보급기관	기회관리관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경</div>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경</div>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경</div>
기	법무과장			
관	법제계장			
제	감성희	협	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결재 1972. 2. 21 시장실             </div>
정수	가안참조	발	통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정일 1972. 2. 21 시장실             </div>
제목	서울특별시 지정대행 촉양사 규정 폐지			
1. 당시에서는 종래 지정대행 촉양사를 별도 지정하여 왔으나 건설부에서 엄격한 기준 하에 용역업체의 등록지정을 하고 있어 건설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촉양사로 하여금 당시의 용역업체로 대체 위탁하여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연맹 서울특별시 지정대행 촉양사 규정을 별안과 같이 폐지하고자 합니다. 끝.				
정서				
관인				
발인				

0201-1-8A

1969. 11. 10. 승인

190mm×268mm 백상지507/m<sup>2</sup>

(서울특별시립 상생 직업보도원 인쇄)

0508

<공 포 안>

서울특별시순회제 호

서울특별시지정대행추방사규정제지에 관한 ~~준행은~~ 이에 공포한다.

1972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양 혁 석

서울특별시지정대행추방사규정제지

1970.5.20 서울특별시순회제 277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지정  
대행추방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칙 시행한다.

책 지 이 유

당시에서는 종래 지정대영주양사를 별도로 지정하여 왔으나 건설부  
에서 엄격한 기준하에 용역업체의 등록지정을 하고 있어 건설부장  
관의 등록을 받은 주양사로 하여금 당시의 용역업체로 대체 위약  
하여 일부수행의 실효를 기하고자 현행 서울특별시지정대영주양사규  
정을 철폐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지정 대행 촉망사 규정**

제 1 조 (설치) 서울특별시 건설사업 및 사유재산관리 매각매수에 필요한  
계촉량을 신속정확히 실시함으로써 사업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정대  
행 촉망사(이하 대행촉망사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 (적용에) 대행촉망사에 관하여는 칙령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촉망구분) 서울특별시 대행촉망은 다음과 같이 대별한다.

1. 화정촉망
2. 서부촉망
3. 일반촉망

제 4 조 (대행촉망사의 자격) 대행촉망사(연령 60세이하)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1. 재무부에서 시행하는 지적촉망사 자격(전형) 시험에 합격한자.
2. 대학또는 전문학교(보통과)를 졸업한 자로서 보무 또는 촉망실무  
(정부기관 또는 중요기업체 이하등)에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자.
3. 고등학교(구제실업학교 포함) 보무 기술 계를 졸업하고 보무또는 촉망  
실무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자.

제 5 조 (대행업의 지정) 대행촉망사로서 서울특별시의 대행 촉망업을 하  
고자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꾀하여야 한다.

1. 경력 10 년 이상의 사무원
2. 화정및 서부촉망에 있어서는 기술 총 사원 3 명이상 일반 촉망은 2명  
이상 (각과 보무과 출신으로 함)

3. 특량기계및 제도기구

1) 프란시드	2	2) 베벨	2
3) 제도대대형	1	4) 용판(아미타드부)	5
5) 계산기	1	6) 약제도대	1
7) 루타니메릭	1	8) 엔드베벨	1
9) 제도기	2	10) 볼	20
11) 절권축	1	12) 축력(5G미릭)	5
13) 상력	3	14) 호권축	3

이상기구는 항상 구비되어야 한다.

제 6 조 (지점의 수속) 대행특량사의 지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대행특량지정원
2. 지명서
3. 학력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지적특량사 자격증
6.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7. 신용증명서 (시, 구, 읍 면장발행)
8. 특량에 필요한 기구및 기술종사자 조서
9. 사무소 위치의 약도
10. 기타 필요한 서류

제 7 조 (종업원 수계) 대행특량사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대행특량사의 취소 또는 1 년이하의 특량

업무를 정지할수 있다. (3.5)

1. 축양의 어위 또는 지성법규에 어긋나는 축양및 축양도면을 불경박하게 작성하였을 때
2. 대양축양업무를 막인에게 권비양도한 사실이 있었을 때
3. 기타 이유없이 대양축양업무를 거부하였을 때

부 칙

이 규정은 서기 1970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 2 안)

수신 수신처장조

발신 시장

제목 ~~공포~~ 공포 통지

별첨과 같이 ~~공포~~ 물 공포하였으므로 통지함.

공포년월일	공포번호	건명	비고
년 월 일	제 호	나을특별시 지령대령 주령사 주령 호제	

첨부: ~~공포~~ 문 1부 끝.

수신처: ~~시도 1-4, 시라 1-58, 나령 1-9~~ ~~시도 1-4~~

(제 3 안)

수신 공포실장

발신 법무과장

제목 ~~공포~~ 시보 게재의뢰

별첨과 같이 ~~공포~~ 가 공포되어 통지하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포년월일	공포번호	건명	비고
년 월 일	제 호	나을특별시 지령대령 주령사 주령 호제	

첨부: ~~공포~~ 문 2부 끝.

색인번호

18

생산년도

1973

보존기간

증명주

분류번호

02110

기능명칭

훈령

령

367

376

서울특별시

( )



색인번호

1973

보존기간

증명주

분류번호

181

기능명칭

훈령

367

376

서울특별시



# 석 인 목 록

페이지	월 일	로	부터	문서기호 번	제 목 (내 용)
1-10	1973 5.24			후령 367	서울특별시 세과징기관과 공무원의 실적 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
11-14	1973 5.30			368	서울특별시 위임전결 규정 개정
15-17	6.18			369	서울특별시 위임경찰국 위임전결 규정 개정 규정
18-19	8.17			370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분부 운영 규정 개정
20-21	8.17			371	서울특별시 소방분부 위임전결 규정 개정
22-22	9.6			372	서울특별시 강수도 급수 사용료 과징 사무처리 규정중
23-23	9.20			373	서울특별시 민원서류 처리 심의 규정 개정
24-24	9.25			374	서울특별시 경찰국 수사분부 운영 규정중 개정
25-25	10.2			375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물 정리 대책 심의회 규정 제정
26-43	10.8			376	서울특별시 구 및 출장소 위임전결 규정 개정